

1. 개정 이유

노선버스와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의 현실화, 운수 종사자의 불편 해소, 유상운송용 자가용의 차령 연장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역버스 운행거리 기준 산정 합리화 (안 제8조제2항)

광역버스의 운행거리 산정 시, 고속국도 등을 이용하는 운행경로 상 기점 행정구역과 다른 행정구역을 반복적으로 진출입하는 경우, 기점 행정구역의 경계는 마지막 경계로 완화

나. 운전자격시험 응시 관련 증명서 간소화 (안 제53조제1항제3호)

운전자격 시험응시자(버스 및 택시)는 실제 운전업무 시작 전 까지만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간소화

다. 운전자격 관련 등록·발급·재발급시 사진첨부 축소 (안 제55조제2항, 제55조의2제1항, 제56조제2항제2호)

운전자격증 발급, 운전자격 증명의 발급 및 재발급시 사진 2장을 첨부하게 되어 있던 조항들을 각 1장만 첨부하도록 완화

라. 모바일 운전자격증 신설 (안 제55조제3항)

운수종사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실물 운전자격증은 현행대로 발급하되, 모바일 운전자격증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마.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 차령 기준 완화(안 제103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는 사업용보다 운행거리가 짧은 특성 등이 있어, 현행 최대 11년(9+2년)인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기준을 최대 13년(11+2년)으로 연장

바.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 허가 갱신 기간 연장(안 제104조제2항)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허가 갱신 기간을 당초 허가 만료일 전 30일에서 허가 만료일 전 60일 이내로 연장

사. 광역버스 운송사업자 서비스 평가체계 명확화(안 별표4)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면허하는 광역버스에 대한 서비스 평가체계 도입을 위해서, 광역버스 운송사업자들이 서비스 평가에 응하여야 하고 부실 운영으로 평가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

아.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처리기한 현실화(안 별지 제15호 서식) 현재 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처리기간이 짧아 관할관청의 행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처리기간을 5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계”를 “경계(고속국도 등을 이용하는 운행경로에서 행정구역이 반복적으로 바뀌는 경우 기점 행정구역의 경계는 운행경로 상 마지막 경계로 한다)”로 한다.

제5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55조제2항 중 “2장”을 “1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전자격증”을 “운전자격증(전자문서로 된 자격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 중 “2장”을 “1장”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제2호 중 “2장”을 “1장”으로 한다.

제103조의2제1항 중 “9년”을 “1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1년”을 “13년”으로 한다.

제104조제2항 단서 중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를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 60일 이내에”로 한다.

별표 4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서비스 평가에 관한 준수사항

- 1) 영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운송사업자는 서비스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한정면허기

간동안 실시하는 서비스 평가에 응해야 하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2) 영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운송사업자는 매년 실시하는 서비스 평가를 통하여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평가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즉시”를 “5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기점 행정구역의 <u>경계</u> 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역 내 둘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점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해당 사업의 노선을 정할 수 있다. 1. 2. (생략) ③ ~ ⑧ (생략)	제8조(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경계(고속국도 등을 이용하는 운행경로에서 행정구역이 반복적으로 바뀌는 경우 기점 행정구역의 경계는 운행경로 상 마지막 경계로 한다)</u> ----- ----- -. ----- ----- ----- ----- ----- ----- -----.
제53조(운전자격시험의 응시) ①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버스운전,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53조(운전자격시험의 응시) ① ----- ----- ----- -----

[illegible]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운전자격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1장

③ _____

호서식의 운전자격 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은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버스, 택시) 운전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55조의2(운전자격증명의 발급 등) ①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이하 “운전자격증명”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진 2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56조(운전자격증 등의 정정 및 재발급) ① (생략)

② 운전자격증등을 잃어버리거나
 나 혈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체 없이 별

----- 운전자격증(전자문
서로 된 자격증을 포함한다)-----
-----.

제55조의2(운전자자격증명의 발급
등) ① -----

----- 1장-----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6조(운전자격증 등의 정정 및 재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
(명)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에
그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1. (생략)

2. 사진 2장

제103조의2(유상운송용 자가용자
동차의 차령) ① 제103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이하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라
한다)의 차령은 9년으로 한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차령과 제3항
에 따라 연장된 기간의 합은 1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4조(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의 신청 등) ① (생략)

②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자가
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기간
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유상
운송 허가기간이 끝난 후 유상
운송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유

-----.

1. (현행과 같음)

2. --- 1장

제103조의2(유상운송용 자가용자
동차의 차령) ① -----

----- 11년-----.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13
년-----.

제104조(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
음)

② -----

-----.

상운송 <u>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u> 관할관청에 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 <u>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 60일 이내</u> ----- -----. ③ (현행과 같음)
--	---